



# 월간 뉴스레터

*Smart decisions. Lasting value.*

2023년 11월호

## Contents

### 회계정보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사전예고

### 세무 및 법률정보

-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한-이란 이중과세방지협정 부분 개정 협상 타결 및 가서명
- 거짓 계약서 관련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배제
- 최신 세무예규 · 판례

### 한울회계법인 업무소개

- 감사, 인증 및 관련 재무자문
- 세무신고/세무자문/세무불복
- 국제조세/이전가격
- 기업관리업무 서비스(BPO)
- 지역 및 관광개발컨설팅
- 전략/인사/리스크/관리회계/마케팅/신사업전략 등
- SOC 컨설팅
- 기업금융/구조조정/M&A/Transaction Service

[한울회계법인은 매출액기준 업계 7위 규모이며, Global Top10 회계 네트워크의 하나인 Crowe Global의 한국 Member Firm입니다.]

한울회계법인의 뉴스레터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뉴스레터 관련 연락처]

#### ▶ 연락처

전화번호 : 02-316-6646(교환 316-6600) - 팩스번호 : 02-775-5885

이메일 주소 : [secretary@crowe.kr](mailto:secretary@crowe.kr)

Website : [www.crowe.kr](http://www.crowe.kr)

#### ▶ 사무실 위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 3층~8층, 10층 (우 : 06179)

ABAS 본부  
02 - 316 - 6621

회계정보 등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사전예고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3.9.22]

주요내용

주요내용

◆ (평가·보고 기준) 기업의 책임의식 제고 및 제도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율규정으로 운영하던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을 규정화하고, 주요 용어, 서식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 '24.1.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기존 이관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자 1년간은 상장협의 모범규준 적용도 가능합니다.

◆ (산업전문성 기준) 상장회사가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산업의 전문성을 갖춘 감사인력을 지정하기 위해 관련 요구절차\* 및 산업전문성 분류기준\*\* 등을 마련했습니다.

\* 산업전문성 산업(11개), 회사가 산업전문성 필요 여부를 지정기초자료 신고서에 기재 등

\*\* 최근 10년 이내 관련 산업에 속한 기업의 감사·비감사용역을 200시간 이상 제공한 자 등

◦ 감사인의 산업전문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수주산업, 금융업(총 4개)은 '24년부터 적용하되, 다른 산업(총 7개)은 '25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기대효과)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을 규정화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내실을 다지고, 산업전문성을 갖춘 감사인 지정으로 감사품질 제고와 효율적인 감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개요

1. 개요

□금융감독원은 외감제도 보완방안\* 및 외부감사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보고 기준 및 지정 감사인의 산업전문성 기준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 '22.10.5.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 '23.6.12.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1차 개정 : '23.5.2., 2차 개정 : '23.9.14.

주요 개정내용

2. 주요 개정내용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보고  
기준 마련

1)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 마련

◆기업의 책임의식 제고 및 제도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과 이를 인용하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 (기존 모범규준을 준거) 기존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제정·운영하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을 준거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절차\*에 맞게 구성하였습니다.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프로세스는 (붙임 1) 참조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 주요 내용)

① 회사의 대표이사(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하여야 합니다.

[참고]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절차

□재무보고위험 식별	□통제의 식별	□통제의 설계·운영 효과성 평가	□평가결과 문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무보고의 양적, 질적요소 고려</li> <li>부정위험 고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핵심통제 선정</li> <li>전사적 수준의 통제 효과성을 고려</li> <li>정보기술 일반통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제위험 평가</li> <li>평가 증거자료 결정</li> <li>평가대상 사업단위 선정</li> <li>설계 효과성 평가</li> <li>운영 효과성 평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영진의 평가근거 문서화</li> <li>결론도출근거 문서화</li> </ul>

② 회사의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한 뒤 미비점에 대한 평가 및 조치 후 운영실태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이사회·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참고]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결과 보고 절차

□미비점에 대한 평가	□미비점에 대한 조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작성	□운영실태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별·결합하여 중요한 취약점인지 고려</li> <li>양적·질적요소 고려</li> <li>보완통제 영향 평가</li> <li>미비점이 중요한 취약점인지 평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적시시정체계 마련</li> <li>개선방안을 감사(위원회) 보고</li> <li>감사(위원회) 권고를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li> <li>사후 이행여부 확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발견된 취약점을 고려하여 효과성에 대한 결론</li> <li>운영실태보고서 포함내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주총회·이사회·감사(위원회)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li> </ul>

③ 회사의 감사(위원회)는 경영진과 독립적인 입장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에 담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미비점이나 취약점을 시정시켜야 합니다.

□ (기타 개선 사항) 주요 용어\*를 새롭게 정의·정비하여 평가·보고기준 총칙에 반영하고, 실무상 해석에 이견이 많았던 평가 대상 사업단위를 명료하게 규정\*\*하였습니다.

\* 핵심통제, 통제위험, 통제실패위험, 독립적인 평가, 상시적인 모니터링, 변화관리체계 등 20개를 총칙 문단2에 일괄 규정

\*\* 평가대상 사업단위 제외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제외 사업단위의 부문정보를 운영실태보고서에 공시함에 있어 영업이익 정보를 제외(평가·보고기준 문단 14)

※ 기존에 문의가 많았던 내용(FAQ)은 가이드라인에 반영하고 명확한 설명과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

□ (운영실태·평가보고서 서식 정비) 운영실태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추가로 규정화\*하고, 보고서 서식 등을 개선하여 가이드라인에 구체적인 양식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중요 취약점 관련 시정조치 계획에 감리 관련 시정조치 계획 포함(평가·보고기준 문단 25 사. 단서 신설)

□ (시행시기) 새로운 평가·보고기준은 '24.1.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상장사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  
기준 마련

2) 상장사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 기준 마련

◆상장회사가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산업의 전문성을 갖춘 감사인력을 지정하기 위해 산업전문성 요구절차 및 분류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산업 분류) 상장회사 및 회계법인 의견을 반영하여 금융업, 수주산업 등 11 개의 산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의 대분류 및 중분류 기준)을 산업전문성이 필요한 산업으로 정하였습니다.

구분	산업 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제 10 차 기준)
가.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소분류 201(기초화학물질제조업), 192(석유정제품제조업)
나.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중분류 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다.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대분류 D(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라.	건설업 등 수주산업	·대분류 F(건설업), ·소분류 311(선박 및 보트건조업), 312(철도장비제조업), 313(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제조업)
마.	운수 및 창고업	·대분류 H(운수 및 창고업)
바.	통신, 엔터테인먼트, 방송업	·중분류 59(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60(방송업), 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소분류 612(전기통신업), 631(자료 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계속>

구분	산업 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제 10 차 기준)
사	소프트웨어개발업	·소분류 582(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아.	은행 및 저축 은행업	·소분류 641(은행 및 저축기관)
자.	보험업	·소분류 651(보험업), 652(재보험업)
차.	자본시장 등 기타금융업	·소분류 642(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661(금융 지원 서비스업), 649(기타금융업)
카.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대분류 M 중 중분류 71(전문서비스업) 제외 ·중분류 중 73(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제외하나 소분류 739(그외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는 포함

※ 자세한 내용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참조

□ (시행시기) 회계법인의 산업전문인력 확보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업 분류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 (24년 1월 1일부터 적용) ①건설업 등 수주산업, ②은행 및 저축은행업, ③보험업, ④자본시장 등 기타금융업

◦ (25년 1월 1일부터 적용) ①기초화학물질 제조업, ②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③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④운수 및 창고업, ⑤통신·엔터테인먼트·방송업·게임업, ⑥소프트웨어 개발업, ⑦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산업전문성 요구절차) 상기 산업을 영위하는 상장회사는 지정 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정기초자료 신고서에 산업전문성 필요 여부를 기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산업전문성 감사인 지정절차

□ 지정기초자료 제출(회사, 감사인→금감원)	□ 업전문성 분류	□ 지정감사인 통지 (금감원→회사, 감사인)	□ 재지정 신청 (회사, 감사인→금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회사: 산업전문성 필요여부* 기재</li> <li>▪감사인 :산업전문가 보유여부 기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사인의 산업전문가 기준충족여부 판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회사가 요구하는 산업전문성을 갖춘 감사인 지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회사 : 감사인이 산업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li> <li>▪감사인 : 보유한 산업전문가 수에 비해 지정 받은 회사 수가 많아 감사품질 확보가 어려운 경우</li> </ul>

\* '불필요' 또는 기재하지 않은 경우, 산업전문성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 (지정 감사인의 산업전문성 기준) 감사팀 내 산업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산업전문가\*의 분류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최근 10년 이내 관련 산업 내 기업에 감사·비감사용역을 200시간 이상 제공한 자, 최근 3년 이내 관련 산업협회 등에서 주관하는 산업교육 2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등

**외부감사규정  
개정사항 적용을  
위한 관련 서식  
개정**

**3) 외부감사규정 개정사항 적용을 위한 관련 서식 개정**

□ (재무기준\* 수치 산정 재무제표 변경) 외감규정(§12③)의 개정으로 수치 산정 재무제표가 변경(연결→별도)됨에 따라 지정기초자료 신고서를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①3년연속 영업손실 또는 ②3년연속 부(-)의 영업현금흐름 또는 ③3년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

□ (경력기간별 공인회계사 점수 변경) 변경된 경력기간별 점수를 지정기초자료 신고서의 서식에 반영하였습니다.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요건  
점검보고서 개정**

**4)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요건 점검보고서 개정**

□ 실효성 있는 등록요건 유지의무 점검을 위해 점검보고서에 대표이사 서명란 등을 추가하고, 사후심리 점검방법을 보완하였습니다.

**3. 향후 계획**

□ 외감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은 11.15.(수)부터 12.5.(화)까지 사전예고를 실시하고, 이후 연내 시행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 예고기간 : 2023.11.15 일(수) ~ 2023.12.5 일(화), (20 일)

■ 사전예고 관련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일반우편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회계관리국

- 전자우편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ohk@fss.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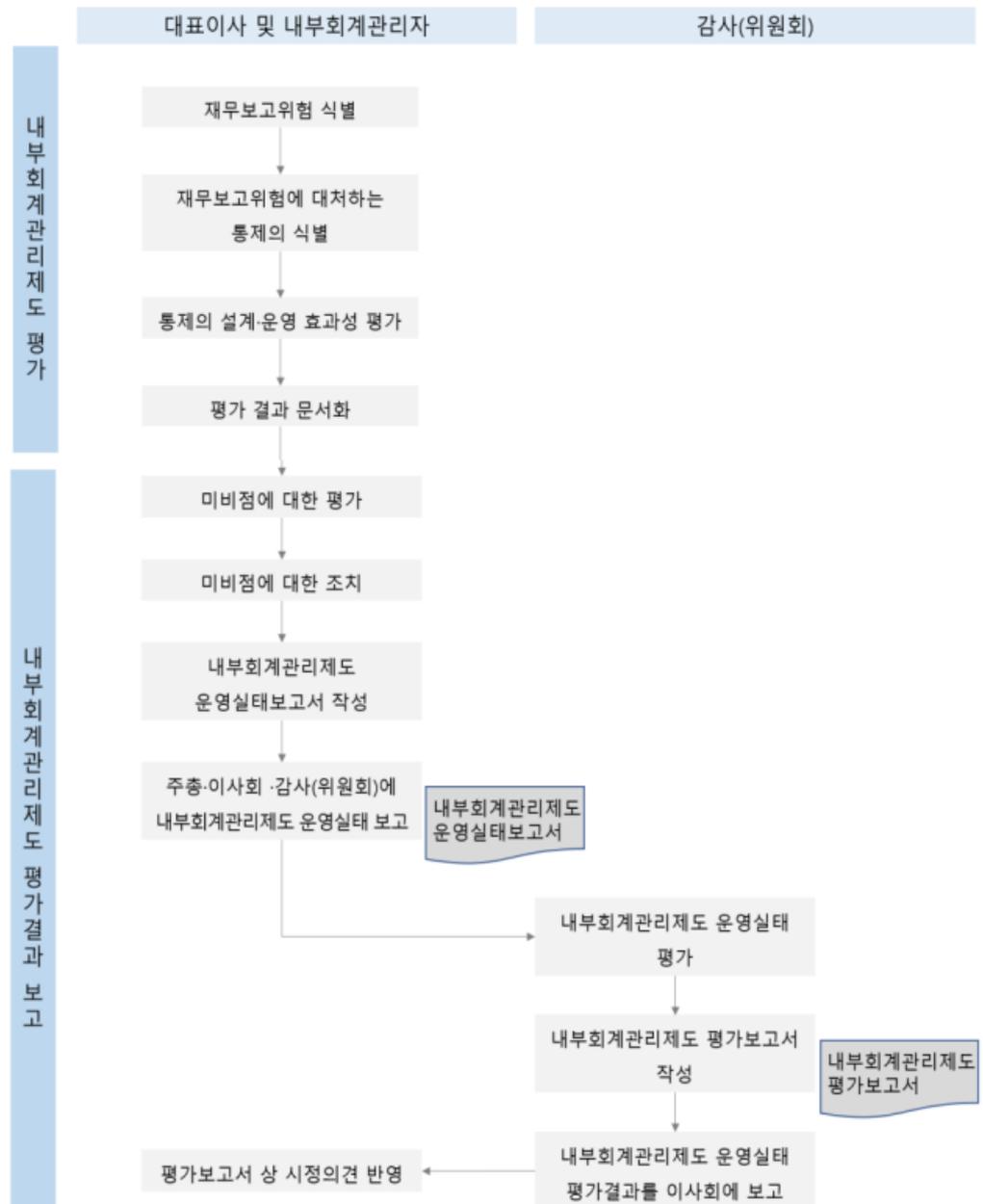
(감사인 등록요건 점검보고서 관련) doohyunnam@fss.or.kr

(그 외 제도 관련) narae.kang@fss.or.kr

- 팩스 : 02-3145-7769

※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 업무자료 ☞ 금융감독법규정보 ☞ 세칙 제.개정 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별첨]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프로세스



세무자문본부  
02 - 316 - 6630

세무 및 법률정보 등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4년 1월 1일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기획재정부는 관련 법률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1월 9일(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글로벌최저한세 제도는 국가 간 조세 경쟁을 방지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에서 합의된 것으로서 각국은 관련 규정의 입법을 통해 글로벌최저한세 제도를 이행하며, 이를 위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2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 포괄적 이행체계 (Inclusive Framework): 다국적 기업의 세원 잠식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대책(BEPS) 이행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체(현재 143개국 참여)로서 필라1:2 논의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11.9.~12.7.),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3년 12월 중 공포될 예정입니다.

**참고 국조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글로벌최저한세 관련)**

**< 법률(국조법 §60등) 개정내용 >**

- (개요) 다국적기업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 적용 시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 부여
  - ▶ (적용대상)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5억 유로 (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
  - ▶ (과세액) 국가별로 계산한 실효세율(=조정대상조세/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기준으로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만큼 추가과세
    - \* 조정대상조세: 회계상 당기법인세비용에 조정사항을 반영한 세액 합계
    - 글로벌최저한세소득: 회계상 순손익에 조정사항을 반영한 소득 합계
  - ▶ (시행시기) '24.1.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 구체적인 조정사항, 과세방법 등은 시행령에 위임

○ **(정의 명확화)** 주요 용어\*들의 개념을 규정하고,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적용이 배제되는 제외기업\*\* 요건 명확화

\* 그룹, 지배지분, 연결재무제표 등

\*\* 정부기관,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투자펀드 등

○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 회계상 순손익에 조정사항을 반영

구분	조정사항
필수조정	조세비용 가산, 배당소득 차감, 지분관련 손익 제외, 유형자산재평가 손익 포함, 비대칭 외환손익 제외, 정책적 부인비용(뇌물 등) 제외, 전기오류 및 회계정책변경 효과 반영 등
선택조정	회계상 인식한 주식보상비용 대신 세무상 손금으로 조정, 공정가치·손상 평가 대신 실현주의 회계처리로 조정 등

○ **(조정대상조세 계산)** 각 구성기업별로 회계상 당기법인세비용으로 계상된 대상조세\*에 조정사항\*\*을 반영

\* 소득이나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 일반적인 법인세에 대신하여 부과되는 세금 등

\*\* 조정사항 예시

- 세전이익 산출단계에서 비용으로 계상된 대상조세의 가산
- 3년 내 납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비용의 차감 등

**한-이란 이중과세방지협정  
부분 개정 협상  
타결 및 가서명**

**한-이란 이중과세방지협정 부분 개정 협상 타결 및 가서명**

기획재정부는 11.6(월)~8(수)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된 한-이란 조세조약 (이중과세방지협정) 부분 개정을 위한 교섭회담을 통해, 개정의정서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함.

**[주요 합의내용]**

이번 타결된 한-이란 조세조약 개정은 상호합의 절차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상호합의 신청국가를 거주지국에서 양 체약국으로, 신청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조세 관련 정보교환과 관련하여 대상정보 범위를 확대하고 협조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특정 조세조약 혜택의 적용이 거래의 주요목적인 경우 해당 조세조약 혜택을 부인하는 조세조약 혜택의 자격에 관한 원칙을 신설하는 것 등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음.

**[기대 효과]**

이번 한-이란 조세조약 개정 타결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제조세회피 방지대책 (BEPS) 권고사항, 경제개발협력기구 표준 이중과세방지협약(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 on Capital) 개정내용 등 변화된 국제기준을 반영함으로써 조세회피 방지 및 과세 합리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향후계획]**

이번 한-이란 조세조약 개정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 및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임.

거짓 계약서  
관련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배제

**거짓 계약서 관련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배제**

부동산 또는 분양권을 양도하고 거짓계약서(다운계약서, 업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1. 부동산 등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거짓계약서(다운·업계약서)를 작성하는 불이익**

**(1) 비과세·감면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양도소득세 부과**

- ✓ 양도자: 1 세대 1 주택 비과세,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비과세·감면 배제 후 양도소득세 추징
- ✓ 양수자: 양수한 부동산을 향후 양도시에도 비과세·감면 규정 적용 배제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추징

**(2) 가산세 부과**

- ✓ 무(과소)신고 가산세: 무(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최고 40%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
- ✓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무(과소)납부일수(납부기한의 다음날~납부일까지의 기간) 당 0.022%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

**(3) 과태료 부과**

- ✓ 지방자치단체 실거래신고 관련 담당부서에서 부동산 등 취득가액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처분

**2. 양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 주의사항**

- ✓ 양수자가 양도자 대신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당초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므로,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추후 양도자에게 추가로 양도소득세와 가산세 부과

**3. 공인중개사가 거짓계약을 작성한 경우 불이익****(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등 영업 제한**

- ✓ 거짓으로 거래내용 작성, 이중계약서 작성, 전매 등이 제한된 부동산 매매 중개 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음

**(2)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시 가산세부과**

-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 미발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

- 수입대행계약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 산정 방법 등  
(사전법규부가 2023-417, 2023.10.25)

(사실관계)

- (주)◇◇◇◇◇(이하 "신청법인" 또는 "을")은 상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주)□□□(이하 "갑")과 '상품수입대행 계약'(이하 "쟁점계약")을 체결하여
  - 갑이 국외 공급처, 상품 등을 확정하여 신청법인에 상품수입대행을 의뢰하면
  - 신청법인은 국외 공급처와 상품가격을 협의하여 INVOIC를 발급받고 갑에게 상품 납품가격(신청법인의 마진 포함)에 대해 견적서를 제출함
- 갑은 상품 납품가격, 수량 등을 확인 후 신청법인에 발주서를 발행하여 발주를 확정하면 신청법인은 국외 공급처에 상품 대금을 송금하고,
  - 신청법인은 자기의 명의로 B/L 등 수취·수입통관 진행,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며,
  - 신청법인은 갑에게 상품을 납품하고, 상품 납품가격·운송비·부대비용 등을 정산하여 갑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며, 이에 대하여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질의요지)

-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체결한 상품수입대행 계약에 따라 국외 공급처로부터 상품을 수입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정산·지급받은 총 금액인지 또는 상품 수입대행수수료(사업자의 마진)인지 여부 등

(회신)

사업자(이하 "을")가 다른 사업자(이하 "갑")와 체결한 수입대행계약에 따라 을이 국외 공급처로부터 재화를 수입하여 갑에게 재화를 공급(이하 "쟁점거래")하는 경우로서

1. 쟁점거래가 을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되는 경우 을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 29 조제 3 항제 1 호에 따라 갑으로부터 정산·지급 받은 대가의 합계액이 되는 것이나, 단순 수입대행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을의 마진을 수입대행 용역수수료로 보아 을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쟁점거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입대행 계약내용, 거래조건 등 구체적인 거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75 조 제 9 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쟁점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사업분리계약을 통해 사업을 일부 인수하여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법규소득 2023-262, 2023.10.19)

(사실관계)

○ 질의인은 AAA 시 AA 구 AA 로 0 번길 00 에 소재하는 배우자 BBB 이 운영하는 TTTT(부동산/임대, 제조/아크릴, 도소매/베크라이트) 사업장에서 수년간 실장으로 근무함.

○ 질의인은 '23.0.00. AAA 시 AA 구 CC 로 000 번길 000 에 WWW(제조/아크릴, 베크라이트 등)라는 상호로 제조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 '23.4.1. 배우자 BBB과 사이에 TTTT의 사업 중 제품의 인쇄 부문을 인수하는 내용의 사업분리계약을 작성하였음.

(질의요지)

○ 배우자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자가 배우자와 사업의 분리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의 일부를 인수하여 별도의 사업장에서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상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라도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부터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창업으로 보는 것이나, 본 건 사실관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해 공급가액이 확정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사전법규부가 2023-510, 2023.10.18)

(질의요지)

- 세금계산서 발급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해 공급가액이 확정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회신)

갑법인이 을법인과 체결한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쟁점계약")에 따라 을법인으로부터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이하 "쟁점용역")를 공급받고 을법인이 갑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1.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 16 조 제 2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9 조 제 1 항제 4 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
2. 쟁점계약에서 정한 월 최대 트래픽 사용량을 초과하여 사용한 트래픽(이하 "초과공급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해 그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초과공급 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해당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3. 세금계산서 발급 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70 조제 1 항 제 3 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업 무 소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자문</li> <li>▪ 세무조정, 세무자문 및 Outsourcing</li> <li>▪ 외국/외투기업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경리, 급여, 총무, Corporate Secretarial Services)</li> <li>▪ 해외진출자문, 기업설립 및 청산자문</li> <li>▪ 국제조세, 이전가격 자문</li> <li>▪ 조직, 인사 전략 / HR</li> <li>▪ 전략수립 및 균형성과관리/평가 /BSC</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 지역 및 관광개발 컨설팅</li> <li>▪ 기업구조조정, 기업투자유치 자문</li> <li>▪ M&amp;A, IPO자문, 자산부채 실사, 주식평가</li> <li>▪ IFRS 전환 및 공시자료 검토</li> <li>▪ 재무 및 경영리스크 분석, 관리, 경영일반 자문</li> <li>▪ 경영계획 및 시뮬레이션 / BSP</li> <li>▪ 정보화계획/ ISP / IT Consulting</li> <li>▪ PI / CRM / Risk Management 등</li> </ul>
문의처	<p>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3층, 5~8층, 10층 (우편번호 06179)</p> <p>TEL: (02) 316-6646, FAX: (02) 775-5885, E-mail: <a href="mailto:secretary@crowe.kr">secretary@crowe.kr</a></p>
발행인	한울회계법인

\* \* \* \* \*

한울회계법인(Hanul LLC)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anul LLC is a member of Crowe Global, a Swiss veren. Each member firm of Crowe Global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Hanul LLC and its affiliates are not responsible or liable for any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member of Crowe Global and specifically disclaim any and all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Crowe Global member.*